

2024년 축산물이력제 이력번호 표시지원사업 계획

1 추진 배경

- 국내산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포장처리·거래내역 등을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하는 식육포장처리업소에 대한 이력번호 표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유통단계 이력사업의 안정적 운영 도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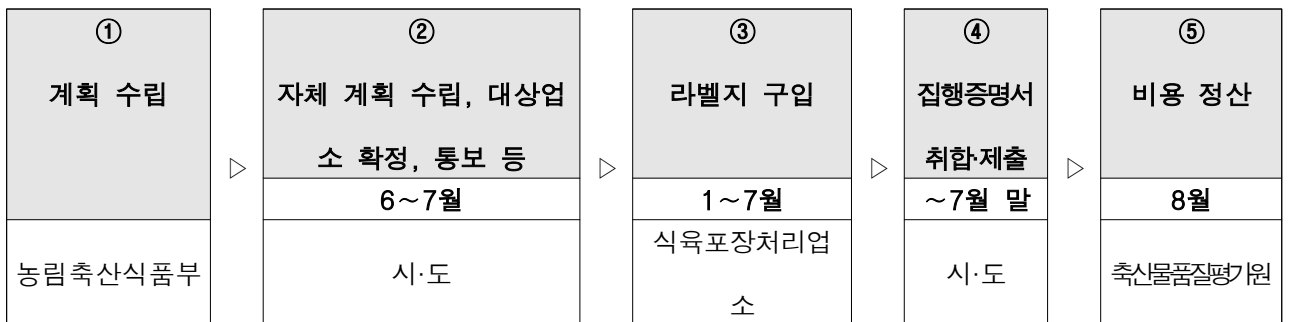
* (관련) 「축산물 이력법」 제18조(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등)

2 사업 개요

- (기 간) 2024. 6. 10. ~ 8. 30.

* 사업기간은 추진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

- (주 체) 구 [지원대상 선정·수요 제출], 축산물품질평가원 [예산집행]



- (대 상) 국내산 이력관리축산물(소·돼지·닭·오리고기)을 취급하는 전산신고 의무 식육포장처리업소

* 식육포장처리업소 중 2개월간 전산신고 실적이 없는 업소 제외

○ (내 용) 포장지 부착용 라벨지 및 이력번호가 인쇄된 포장지 구입
비용 지원

○ (예 산) 6,307천원 / 21개소(소·돼지 18, 닭·오리 3)

3

세부추진계획

□ 추진 주체 및 역할

식육포장처리업소	구	축산물품질평가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▪ 지원 사업 신청▪ 이력번호 표시용 라벨지 구입▪ 증빙 서류 제출(영수증, 통장사본 등) ⇒ 구로 제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▪ 지원 대상업소 선정▪ 증빙자료 확인 및 자금 청구서 제출 ⇒ 시, 농식품부, 축평원으로 제 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▪ 지원 사업 안내·홍보 (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협조)▪ 비용 정산(업소별)

□ 지원 사업 안내문 발송 및 홈페이지 게시

□ 식육포장처리업소 참여신청 및 확인

○ (신 청) 유선·방문 / 2024. 6. 24.(월)까지

○ (라벨지 등 구입) 이력번호 표시용 라벨지 등 구입 및 영
수증 확보

* 2024년 1~7월에 라벨지 구입 내역이 포함된 영수증만 가능

○ (증빙자료 제출) 영수증(또는 세금계산서 사본), 사업자
등록증, 통장 사본 / 2024. 7. 12.(금)까지

○ (지급 청구) 정산 요청서(붙임 1, 2) 시로 제출 / 2024. 7. 19.(금)까지

4

기대효과

- 축산물 이력제 유통단계 이력번호 표시사항의 원활한 이행 도모
- 지원 대상(식육포장처리업소)의 제도 이행 관련 어려움 및 비용 부담 해소를 통한 축산물이력제도 이행 만족도 제고